

보도	2024.7.23.(화) 조간	배포	2024.7.22.(월)
----	------------------	----	---------------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팀 장	황준웅	(02-3145-6540)
	자문·신탁감독팀	담당자	조사역	홍지의	(02-3145-6545)
	자산운용감독국	책임자	팀 장	김세환	(02-3145-6710)
	자산운용인허가팀	담당자	선 임	홍윤태	(02-3145-6712)

##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자본시장법 개정('24.8.14. 시행) 내용 관련 -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 <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

① **(업무영역 정비)**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필요**  
('24.4.5.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신청 안내' 참고)

②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55, §98① 준용)를 금지

③ **(광고규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표시·광고 금지

④ **(진입·퇴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고, 재진입 제한 강화(대표이사→임원까지로 확대)

Q. 법 개정 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기존 방식대로 유튜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7③).

※ '(붙임1)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개요' 참고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유료 영업의 경우에도 회신기능 차단 등 양방향 소통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으면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함

#### 추가 Q&A (유사투자자문업자)

Q1. 카페 및 블로그 내에 회원과 소통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어요.

A1. 투자 조언과 관련하여 '유료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및 댓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유료 영업에 해당하므로 불가합니다.

Q2. 투자자문사와 업무 협약을 맺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도 투자자문 행위가 가능한가요?

A2. 업무협약 만으로는 투자자문이 불가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행위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식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영업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본시장법 §445)

####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 등)'가 **아닙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여타 금융회사(인허가, 등록)와 달리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2  
업무  
방식

Q. 온라인 상에서 회원가입 절차, 환불규정 등에 대한 안내도 1대1 상담이 금지되나요?

A. 회원가입, 환불규정 등에 대한 단순 문의응대는 가능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101①).
  - 따라서,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1 응대는 가능합니다.

3  
진입  
퇴출

Q.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투자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대하여 조언을 하면서,

\*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① 유료회원제 운영(예: 멤버십 서비스) 등을 통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 댓글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운영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양방향 채널로 운영할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② 다만,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예: 별풍선 등)만을 간헐적으로 받는 경우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4

불건전  
영업

Q. 수익률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목표 수익률 xx %」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나요?

A.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표시 또는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법 §101의2②제3호).

○ 따라서,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예: 목표 수익률,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하여 한 종목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자본시장법 §449①제34의3호)

####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자문행위**(미등록 투자자문), **손실 보전행위**,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fss.or.kr)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다만, 형법상 사기 혐의 등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바랍니다.)

#### 5

기타

Q.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투자자의 환불을 제한**하지 않는지 **유의** 바랍니다.

→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붙임 1

##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개요

- **[개요]**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고,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되며, 업무단위별로 취급 상품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 업무단위별 자문 가능한 상품범위

- ✓ 5-1-1(최소자기자본 2.5억원) :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등
- ✓ 5-21-1(최소자기자본 1억원) :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 이외에도 정보교류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필요(주거공간 불가)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

구분	등록요건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 업무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할 것(5-1-1 : 2.5억원, 5-21-1 : 1억원)
전문인력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
대주주·임원	○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충족할 것
신청회사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이해상충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체계를 갖출 것

### [전환 등록 신청방법]

- 1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접속
- 2 민원·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 사전협의 신청
- 3 인허가 업무 선택(자본시장 – 등록 –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 4 사전협의 신청 후 투자자문업 등록신청 화면 이동  
(하단 금융투자업 사전협의 등록신청 바로가기 클릭)

귀하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사전협의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번호는 [202430167]이며, 현재 사전협의 신청 건의 대기번호는 [8]입니다.

금주의 접수건수 (24.04.01~24.04.05)	금주의 완료건수 (24.04.01~24.04.05)	향후 사전협의 진행상황은 <b>사전협의 진행상황조회</b>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b>담당자 배정 후</b> 대기번호 순서대로 <b>면담일정 조율</b> 을 위한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① 실제 면담일정은 협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재 부여받은 대기번호 순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0	

-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제공된 템플릿에 맞춰 등록신청서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비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진입·영업규제]**

구 분	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영업방법	- 일대일(1:1) 투자자문 * 개별 투자자별에게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 불특정 다수 대상의 투자조언 * 불특정 다수에게 동질적 조언서비스 제공
진입요건	- 금융위 등록(자시법§18) * 자기자본, 전문인력, 대주주 요건 등 심사	- 금융위(금감원) 신고(자시법§101) * 결격요건 미해당시 단순 신고 후 영업 가능
감독검사	- 금감원 검사대상(자시법§419) (자본법상 금융투자업자)	- 금감원 제한적 검사(자시법§101⑪) (보고·자료제출의무 위반시 등)
권유규제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 (금소법§17~21)	-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금지행위	-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적용(자시법§98, 금소법§22~23) * 투자자문업자 영업규제 및 금융투자회사 공통 영업규제 모두 적용	- 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규제 중 일부 준용(자시법§98) * 금전·증권 등의 보관·예탁 금지, 금전·증권 등의 대여 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공시보고	- 업무보고서 등 제출(자시법§33①) - 주요 경영사항 공시(자시법§33③)	- 업무 폐지,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보고(자시법§101②)
확인	- 금감원 '파인'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금감원 '파인'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금융회사 여부	- ○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적용	- X →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등 미적용